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2024. 3. .
제출자 김현주 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운영 및 운영자와 급식장소 지정(안 제4조~제5조)
- 지도점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안 제6조~제7조)
- 표창(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예산조치 : 별도협의
-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2. . ~ 2024. 3. .
 - 예고결과 :
 - 부서협의
 - 협의기간 : 2024. 2. . ~ 2024. 3. .
 - 협의결과 :
 - 관련부서 : 노인장애인과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노인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지원 대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중 75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3.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급식
2. 도시락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 및 급식장소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 및 급식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시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제4조에 따른 노인 급식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표창) 시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복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6, 345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2, 3453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자활지원) 044-202-3072, 307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나. 비용 발생 요인

- 급식지원비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4. 9. 1. ~ 2028. 12.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급식비	170,000	624,000	728,000	832,000	936,000
인건비	148,530	445,200	529,400	613,600	697,800
시설비	2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계	568,530	1,099,200	1,287,400	1,475,600	1,663,8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